



손해보험의 이해 6: 위험의 보유와 재보험

김동겸 선임연구원

- **보유(retention)**란 보험회사가 위험의 범위를 한정하여 자신이 책임지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부담을 보유 한도, 보유액, 보유제한액 등으로 칭하기도 함.
 - 위험관리 측면에서 부보를 결정할 경우 자가보험¹⁾ 성격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유로 볼 수 있으며, 위험의 분석 및 평가를 통해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부담할 수 있는 최고책임액이 보유한도(limit)가 됨.
- 한편,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수보험자가 원보험 계약상의 손해보상 책임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보험회사가 다시 인수하도록 하는 보험을 재보험(reinsurance)이라 함.
 - 원보험자가 다른 보험자에게 위험의 일부를 맡기는 것을 출재(出再)라고 하며, 반대로 다른 회사의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인수하는 것을 수재(受再)라 칭함.
 - 재보험을 출재하는 회사는 출재사가 되고 재보험을 수재하는 회사는 재보험자가 됨.²⁾
- 보험회사는 재보험을 통해 위험분산을 통한 경영의 안정성 확보, 위험인수능력 향상, 대재해위험의 분산 등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첫째, 보험회사는 위험 규모에 따라 자신이 부담할 수 있는 책임한도액을 설정하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재보험을 통하여 타 보험회사에 보상책임을 전가시킴으로서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1) 자가보험(self-insurance)이란 경제주체 스스로 장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적립하고 사후에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임. 즉, 자신이 보유한 위험에 대해 대수의 법칙에 의한 손해 발생률을 기초로 비용을 산정하고 적립한 후, 사고 발생 시 적립된 비용으로 위험을 처리하는 위험의 자기보유를 의미함.
2) 재보험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수한 보험을 다시 타 보험회사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를 재재보험이라 하며 이러한 위험을 인수한 보험자를 재재보험자라고 칭함.

- 둘째, 보험회사는 자사의 제한된 담보능력으로 인하여 특정위험에 대한 계약인수가 불가능할 때, 재보험을 통해 담보력 부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음.
 - 즉, 보험회사는 재보험을 통하여 인수한 보험계약에 대한 책임을 다른 보험회사와 분담함으로써, 사업영역 확장이 가능해짐.

■ 재보험은 계약절차상의 차이에 따라 임의재보험(facultative reinsurance)과 특약재보험(treaty reinsurance)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임의재보험이란 원보험자가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재보험계약을 원할 때 마다 재보험자를 선정하고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함.³⁾
- 반면, 특약재보험은 출재회사와 재보험자가 사전에 출재대상계약의 범위, 출재사 및 재보험자의 책임한도액, 재보험 처리방법 등에 대해 약정을 맺어 놓은 후, 일정기간에 걸쳐 약정내용에 따라 재보험청약과 인수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방법임.

■ 또한, 재보험은 책임분담방법을 기준으로 비례적 재보험(proportional reinsurance)과 비비례적 재보험(non-proportional reinsurance)으로 분류할 수도 있음.

- 비례적 재보험은 원수보험자와 재보험자가 인수하기로 약정한 계약금액의 비율에 따라 재보험료가 배분되고 보험금에 대해서도 동일한 비율로 손실부담액이 정해지는 재보험 형태로서, 비례배분재보험특약(quota share treaty)과 초과액재보험특약(surplus treaty)이 있음.⁴⁾
- 비비례적 재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이 아닌 원보험 계약에서 발생하게 될 사고의 손해액을 기준으로 재보험 처리를 하는 것으로, 출재사가 책임을 지는 일정한도의 보유를 초과하는 모든 손해액에 대해서 재보험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식임.⁵⁾

3) 임의재보험의 경우, 원보험자가 계약별로 자기의 보유분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으므로 출재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더 많은 재보험자에게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나, 재보험담보가 없으므로 재보험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원보험자의 담보능력을 초과하는 위험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가중됨으로써 원보험계약 인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단점 또한 존재함.

4) 비례배분재보험특약(quota share treaty)은 보험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금액에 대해 일정비율을 재보험하는 특약이며, 초과액재보험특약(surplus treaty)은 대상이 되는 개별 원수계약에 대해 원보험자가 인수하여 보유할 수 있는 최대금액을 특약으로 정하고 동 범위 내에서 보유금액을 결정한 후 보유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출재하는 방식임.

5) 비비례적 재보험에는 위험당 또는 사고당 사고손해액을 기준으로 원보험자와 재보험자 간의 책임을 분할하여 사전에 일정 보상액과 재보험자의 책임한도액을 약정하는 초과손해액재보험특약(excess of cover)과, 일정기간의 누적손해액이 예정손해율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 또는 초과율을 재보험으로 보상받는 초과손해율재보험특약(excess of ratio cover, stop loss cover) 등이 있음.